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5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전품질정책과 전민영 과장, 안드레 사무관(02-509-7238)

국내·외 제품안전 소식, 한눈에 본다

- 기술표준원, 『주간 제품안전 동향』 발간 -
- 국내 55개, 국외 48개 기관 모니터링 -

□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국민들이 국내·외 리콜현황 등 다양한 제품안전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간 제품안전 동향"**을 발간함

○ 기존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 분산되어 제공되었던 정보들을 (주요국 리콜정보동향, 각국 안전정보 등) 한층 보강해 **종합적인 제품안전 소식지**로 개편함

□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리콜현황', '제품위해 뉴스', '제품안전 정책동향'**으로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리콜현황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리콜건수*, 제품명, 제조사, 리콜 처분내용, 주요원인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 리콜건수에는 강제·자발, 제품별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

○ 위해뉴스를 통해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품관련 사고 소식을 취합하여 **관련 기사내용, 사고유형** 등을 전달하고,

○ 국내 기관, 주요 국가, 국제기구 등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제품 관련 안전기준, 법률 등 **주요 정책방향 변화 추세를** 알려 이에 대한 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를 위해, 한 주간 발생한 국내·외 각종 제품안전 관련 정보들을 취합·분류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제품안전포털, 소비자단체, 협회, 유통업체 등에게 이를 전달**할 예정

○ 구체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국내·외 유관 정부기관(32개), 소비자단체 등(28개), 언론·포털(37개) 등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해외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국제기구 등** 권역을 나눠 정보를 수집함

○ 수집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제품안전 주요 대상자인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협회, 유통업체 등**으로 구분지어 각 기관·단체 내 회원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포함시켜 나갈 계획임

□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제품안전 관련 각종 정보도 넘쳐나고 있는 요즘, 매주 발행되는 "주간 제품안전 동향"을 통해 **정보탐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제품안전관리문화 확산**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02-509-72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품안전정보 수집 대상기관

▣ 국내기관

연번	구 분	기관명
1	정부기관	대한민국 정부(www.korea.go.kr)
2		산업통상자원부
3		환경부
4		안전행정부
5		기술표준원
6		소방방재청
7		관세청
8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0		국립전파연구원
11	시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6		FITI시험연구원
17		한국조명연구원
18		KOTITI시험연구원
19		한국전기연구원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가구시험원
2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5		(사)소비자시민모임
26		스마트컨슈머
27		한국소비자원
28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29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30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31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3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33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34		한국제품안전학회
35	언론 및 포털	건설경제신문
36		건설기술신문
37		국토(건설)일보

연번	구 분	기관명
38		건설타임즈
39		디지털타임스
40		소방방재신문
41		안전신문
42		안전저널
43		완구신문
44		전기신문
45		전력산업신문
46		전력신문
47		전자신문
48		정보통신신문
49		환경매일
50		환경법률
51		환경일보
52		한국소비자연대뉴스
53		어패럴뉴스
54		아크로팬
55		소비자리포트

▣ 국외기관

연번	지역	국가	구분	기관명
1	북미	미국	정부기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				미국 리콜 검색
3			소비자단체	미국 컨슈머리포트
4			언론 및 포털	구글 뉴스 미국
5		캐나다	정부기관	캐나다 보건부
6			언론 및 포털	구글 뉴스 캐나다
7	오세아니아	호주	정부기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8				호주 리콜 검색 사이트
9			언론 및 포털	구글 뉴스 호주
10		뉴질랜드	정부기관	뉴질랜드 소비자부
11				뉴질랜드 무역위원회 (규정)
12			소비자단체	뉴질랜드 소비자단체
13			언론 및 포털	구글 뉴스 뉴질랜드

연번	지역	국가	구분	기관명
14	유럽	EU	정부기관	유럽 집행위원회(제품 리콜)
15		영국	정부기관	영국 정부(제조업체 대상 제품 안전규정)
16			언론 및 포털	구글 뉴스 영국
17	국제기구		정부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리콜 정보
18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제품안전 작업반 (OECD WPCPS)
19				국제 소비자제품안전 공무원회의(ICPSC)
20			비영리 기구	국제소비자제품 보건 안전기구 (ICPHSO)
21				유럽 시장감시공무원 제품안전 포럼 (PROSAFE)
22	아시아	일본	정부기관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가이드
23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
24				독립행정법인 NITE
25				소비자청
26			언론 및 포털	쿠로네코 야마토 리콜닷컴
27				후구아이닷컴
28				리콜 플러스
29				인포시크 뉴스
30				NHK 뉴스
31				야후 뉴스
32				구글 뉴스
33		중국	정부기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
34				중국 국가안전생산관리 감독총국
35			언론 및 포털	중국일보
36				신화넷
37				중국넷
38				남방일보
39				상해일보
40				CCTV
41				구글뉴스 중국
42		홍콩	정부기관	홍콩 소비자위원회
43				홍콩 정부뉴스넷
44				홍콩 정부정보넷
45				기전공정서(EMSD) 전기제품 리콜
46			언론 및 포털	홍콩 야후뉴스
47				성도일보
48				문회보

[참고2] 주간 제품안전 동향

주간 제품안전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2013.5.3~5.9】

국내·외 리콜현황

한 국	• 총14건(강제 14건) - 공산품 14건	E U	• 총30건(강제 26건, 자발 4건) - 공산품 25건, 전기용품 5건
미 국	• 총3건(자발 3건) - 공산품 2건, 전기용품 1건	호 주	• 총5건 - 공산품 4건, 전기용품 1건
일 본	• 총4건(자발 4건) - 공산품 3건, 전기용품 1건	뉴질랜드	• 총1건(자발 1건) - 전기용품 1건
캐나다	• 총4건(자발 4건) - 공산품 3건, 전기용품 1건	영 국	• 총0건

제품위해 뉴스

◎ (어린이용총) 장난감 총으로 여동생 사살, 연이은 비극에 흔들리는 미국 사회【5.4, AFPBB News】 — 미국

◎ (체육시설) 목제발판이 무너져 2.7m 낙하, 42세 남성 꼬리뼈 골절【5.4, 요미우리 신문】 — 일본

◎ (세탁기) 뉴질랜드 오클랜드서 삼성 세탁기 화재 발생【5.4, SBS】 — 뉴질랜드

◎ (전기장판) 구로동 다세대주택에서 전기장판 화재【5.6, YTN】 — 한국

◎ (면봉) 면봉 내 이물질로 아동 부상【5.9, asiaone뉴스】 — 싱가포르

제품안전 정책동향

◎ 유럽의 소비자제품안전 규정 변화 계획 — EC

◎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만든다 — 안홍준의원 (새누리당)
- 어린이안전기본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법안 발의

* EC : 유럽집행위원회

I 주요국 리콜동향

【요 약】

한 국	• 총14건 (강제 14건, 자발12건) • 제품 분류(건) – 유아용섬유제품 3, 아동용 섬유제품 11 • 주요 원인 – 알러지성 염료 사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기준 초과 – 조임끈 끝처리가 되지 않는 등 기준 미준수	**E U**	• 총30건 (강제 26건, 자발 4건) • 제품 분류(건) – 완구 11, 의상 8, 신발 4, 조명 4, 라디오 1, 공책 1, 스티커 1 • 주요 원인 – 유아 부품 삼킴 우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크로뮴, 카드뮴 등 기준 초과 – 조임끈 목졸림 및 상해 위험
미 국	• 총3건 (자발 3건) • 제품 분류(건) – 소프트볼 배트 1, 식품 건조기 1, 자전거포크 1 • 주요 원인 – 사용중 배트 분리 위험 – 팬 과열 및 화재 위험 – 자전거포크가 브레이크 부품 위로 구부러져 넘어질 위험	**호 주**	• 총5건 • 제품 분류(건) – 유아침대 1, 조명전선 1, 헬멧 1, 유아복 1, 자전거포크 1 • 주요 원인 – 공간사이 신체 끼일 위험 – USB 연결부분 과열, 화재 위험 – 호주/뉴질랜드 기준 불이행
일 본	• 총4건 (자발 4건) • 제품 분류(건) – 에어컴프레서 1, 드럼스틱 1, 배터리 1, 웨지샌들 1 • 주요 원인 – 과잉 스파크로 파손,소손 가능성 – 내장 버튼전지 교환시 파열사고 – 배터리 발열로 외장 변형 – 발목스트랩 통과 루프의 절단 가능성	**뉴질랜드**	• 총1건 (자발 1건) • 제품 분류(건) – 세탁기 1 • 주요 원인 – 수분이 전기소켓에 침투하여 화재 위험 야기
캐나다	• 총4건 (자발 4건) • 제품 분류(건) – 유모차 1건, 푸드컨테이너 1건, 도끼 1건, 잔디깍이 1건 • 주요 원인 – 유모차 공간사이 목졸림 위험 – 납 허용기준 초과 – 잔디깍이 연료탱크 화재 위험	**영 국**	• 총0건

▣ 한국 기술표준원 : 공산품 14건

– 유아용 섬유제품 : 3개 제품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부적합 내용)	제품사진	처분내용
ABC어패럴 (ABC어패럴)	중국	B044R1696-0013	에린바바리	○ 알러지성 염료 - 안감(브라운 도트 프린트) Disperse Blue 3 : 101.2㎎/㎏ 검출 Disperse Yellow 3 : 193.7㎎/㎏ 검출 (기준 : 사용하지 말 것)		수거·교환
㈜에브리오 (–)	중국	B044R2419-2001	리프렌즈여아 긴소매내의 베스트PK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8배 초과 - 단추 : DBP 0.181% 검출 (기준: 총 함유량 0.1% 이하) ○ 납 24배 초과 - 단추 : 2,165㎎/㎏ 검출 (기준: 90㎎/㎏ 이하) ○ 품질표시 미비 - 수입자명 미기재		수거·수리
미키쇼코사 (㈜지일무역)	일본	B042R218-7300A	11A205279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코팅(화이트/팔부분) : DEHP 3.098% 검출(30배 초과) - 코팅(브라운) : DEHP 0.142% 검출(1.4배 초과) (기준: 총 함유량 0.1% 이하)		수거·교환

– 아동용 섬유제품 : 11개 제품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부적합 내용)	제품사진	처분내용
- (㈜와이제이트레이딩)	중국	-	JBFOC543GHO013	○ 납 2.9배 초과 - 금속똑딱이스냅1 : 894 (기준 : 300mg/kg 이하) ○ 카드뮴 11.9~14.3배 초과 - 금속똑딱이스냅2+3+4 : 1,073 - 금속아일렛 : 899 (기준 : 75mg/kg 이하) ○ 니켈용출량 4.8~17.6배 초과 - 금속똑딱이스냅2+3+4 : 2.4 - 금속아일렛 : 8.8 (기준 : 0.5㎍/㎠/week 이하)		수거·교환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부적합 내용)	제품사진	처분내용
에이씨씨 인터내셔날 (에이씨씨 인터내셔날)	중국	-	SKM509-NF SF52	○ 납 48.1배 초과 - 인조가죽패치 : 4,331 (기준 : 90mg/kg 이하)		수거·수리
㈜제이앤케이 트레이딩 (㈜제이앤케이 트레이딩)	베트남	-	CIS1PQJM51	○ 납 3.5~81배 초과 - 메인지퍼웟/아랫멈춤 : 450 - 후드지퍼웟/아랫멈춤 : 320 - 금속아일렛페인팅 : 7,309 (기준 : 90mg/kg 이하)		수거·교환
경성 (현성어패럴)	중국	-	P1311C051	○ 납 20.7배 초과 - 벨트인조가죽 : 1,869 (기준 : 90mg/kg 이하) ○ 카드뮴(Cd) 1.1배 초과 - 벨트인조가죽 : 84 (기준 : 75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5배 초과 - 벨트인조가죽 : 0.53 (기준 : 0.1% 이하)		수거·수리
- (YD어패럴)	중국	-	아이사랑점퍼	○ 납 1.5~47.4배 초과 - 메인금속지퍼슬라이더/풀러 : 479 - 메인금속지퍼아랫멈춤 : 549 - 후드금속지퍼아랫멈춤 : 771 (기준 : 300mg/kg 이하) - 지퍼풀러손잡이 : 4 266 (기준 : 90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6배 초과 - 지퍼풀러손잡이 : 3.61 (기준 : 0.1% 이하)		수거·수리·교환
CHAMZON (㈜참존어패럴)	중국	-	T3S-T-2-J04	○ 납 41.9배 초과 - 인조가죽패치 : 3,778 (기준 : 90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47배 초과 - 인조가죽패치 : 14.78 (기준 : 0.1% 이하) ○ 코드 및 조임끈		수거·교환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부적합 내용)	제품사진	처분내용
				- 허리부위 양끝이 있는 조임끈에 토글이 사용되고, 끝 처리가 되지 않음 (기준 : 조임끈 끝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처리가 되어야 하고, 토글은 양끝이 없는 조임끈 또는 장식성 코드에만 사용할 것)		
㈜퍼스트어패럴	한국	-	L/BLUE 해지 러블리 JK	○ 니켈용출량 34배 초과 - 리본장식안 금속징(대) : 17.0 (기준 : 0.5㎍/㎠/week 이하)		수거·수리
씨월드컴퍼니 (-)	베트남	-	DYP13192	○ 납 316배 초과 - 큐빅 : 28,490 (기준 : 90mg/kg 이하)		수거·수리
신진섬유 (신홍)	한국	-	KI08D13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45배 초과 - 허리부위고무장식 : 34.50 (기준 : 0.1% 이하)		수거·수리
하나 SM	한국	-	KM07D13	○ 납 2.7배 검출 - 허리부위고무라벨 : 244 (기준 : 90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35배 초과 - 허리부위고무라벨 : 33.56 (기준 : 0.1% 이하)		수거·수리
성복어패럴	한국	-	KH11D13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74배 초과 - 허리부위고무장식 : 37.49 (기준 : 0.1% 이하)		수거·수리

▣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공산품 2, 전기용품 1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소프트볼 배트	수입업체:Hillerich & Bradsby	교체	자발적 리콜	- 사용 중 배트가 분리될 수 있어 사람이 다칠 수 있음
식품 건조기	수입업체: LEM Products Distribution, LLC of West Chester, Ohio	수리	자발적 리콜	- 팬 과열 및 화재 위험
자전거 포크	제조업체: Aprebic Industry Co.Ltd,. of Taiwan	수리 및 환불	자발적 리콜	- 자전거포크가 브레이크 부품 위로 구부러져 넘어질 수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 : 공산품 3건, 전기용품 1건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에어 컴프레서	주식회사 PAOCK	회수	자발적 리콜	- 작동 중 모터 내의 과잉 스파크가 발생하여 본체가 파손, 소손될 가능성이 있음
드럼 스틱 (전구 내장)	주식회사 칸다 상회	환불	자발적 리콜	- Grover/Trophy 브랜드 「Firestix FX-12」 드럼 스틱의 내장 모니터 버튼 전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제품 본체에서 분리했을 때 전지가 파열되는 사고가 1건 발생. 사고 원인 조사중
배터리 (디지털 카메라용)	주식회사 니콘	회수 및 교환	자발적 리콜	- Li-ion 재충전 가능 배터리 「EN-EL15」가 발열, 외장이 변형되는 사상이 보고됨. 대상 제품은 내부 부품 불량으로 인하여 기능 불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드물게 발열하여 배터리 외장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음(2012년 4월 24일부터 회수 안내)
웨지 샌들	주식회사 BEAMS	회수 및 환불	자발적 리콜	- 2013년 3월 17일~4월 15일까지 판매한 <FREE FISH 웨지 샌들>의 발목 스트랩을 통과시키는 <루프>가 절단될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 보건부 : 공산품 3건, 전기용품 1건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유모차	iCandy World Ltd.	부품 교환 (범퍼 바)	자발적 리콜	- 범퍼 바와 유모차 시트 아랫부분 사이의 공간으로 유아의 몸이 빠져나올 경우, 목이 졸려 교살될 위험성이 있음. 관련 사고나 부상 보고가 있음(상세 사항 불명)
푸드 컨테이너	Elephant Stainless Products Manufactory Co. Ltd.	폐기 혹은 도장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교환	자발적 리콜	- 제품에 포함된 납이 허용 한도를 초과. 아동이 삼키거나 깨물 경우 납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도끼	Royal International Corp.	환불 및 회수	자발적 리콜	- 망치나 도끼질을 할 경우, 자루와 날 부분을 고정하는 부분이 헐거워져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음
잔디깎이	The Toro Company	무상 수리	자발적 리콜	- 잔디깎이의 연료 탱크의 화재 위험성이 있음

▣ 유럽 EC(집행위원회) : 공산품 25건, 전기용품 5건

국가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스웨덴	플라스틱 피규어	미상	시장 제품 회수	자발적 리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환경적 위험 - REACH, 유럽위원회 결의안 519/2012 불이행
	의상	미상	시장 제품 회수	자발적 리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환경적 위험 - REACH, 유럽위원회 결의안 519/2012 불이행
스페인	플라스틱 완구	Alex Bog	국경에서 수입 거절	강제적 리콜	- 버튼배터리를 입에 넣고 삼킬 수 있으므로 질식 및 화학적 위험 - 완구 안전지침 및 EN 71-1, UNE 62115 불이행
	플라스틱 인형	Princess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되어 화학적 위험 - REACH 불이행
	마라카스 (완구)	Aguila de Oro Toys	국경에서 수입 거절	강제적 리콜	- 작은 부품을 유아가 삼키기 쉽기 때문에 질식 위험 - 완구 안전지침 및 EN 71-1 불이행
	완구	Aguila de Oro Toys	국경에서 수입 거절	강제적 리콜	- 작은 부품을 유아가 삼키기 쉽기 때문에 질식 위험 - 완구 안전지침 및 EN 71-1 불이행
	플라스틱 인형	V&F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되어 화학적 위험 - REACH 불이행
	탁상 램프	Avocado	소비자 리콜	강제적 리콜	- 금속 부품에 닿았을 경우 전선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감전 위험 초래 - 저전압지침(LVD) 및 EN 60598 불이행
이탈리아	봉제완구	Hong Feng Toy	제품의 판매 금지	강제적 리콜	- 작은 부품으로 유아의 질식 위험 - 배터리가 과열되어 화상 위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되어 화학적 위험 - 완구 안전지침 및 EN 71-1, EN 62115, REACH 불이행
그리스	공책	Best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함유되어 화학적 위험 - REACH 불이행

폴란드	휴대폰 완구	Peng Sheng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배터리 부분이 쉽게 열리므로 화학적 위험 초래 – 완구 안전지침 및 EN 71-1 불이행
	주사위 완구	미상	시장 제품 회수	자발적 리콜	– 천 부분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유아의 질식 위험 초래
헝가리	여아용 부츠	Mountain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부츠의 장식 부품이 쉽게 떨어져서 유아의 질식 위험
	공룡알 완구	Hatch'em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강제적 리콜	– 부품을 입에 넣기 쉽기 때문에 유아의 질식 및 호흡 차단 위험이 있음 – 완구 안전지침 및 EN 71-1 불이행
	어린이용 샌들	Haroma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장식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의 질식 위험 초래
	조명체인	미상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강제적 리콜	– 과열될 수 있어 화재 및 감전 위험 – 저전압지침(LVD) 및 EN 60598 불이행
	조명체인	미상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강제적 리콜	– 설계 불량으로 감전 및 화재 위험 – 저전압지침(LVD) 및 EN 60598 불이행
	휴대용 라디오	YIMA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플러그 크기가 너무 작아 사용자의 감전 위험 초래 – 저전압지침(LVD) 및 EN 60065 불이행
	충전식 손전등	D' an Dian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설계 불량으로 감전 및 화재 위험 – 저전압지침(LVD) 및 EN 60598 불이행
	어린이용 코트	Jump & Fish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강제적 리콜	– 후드모자 조임끈으로 목졸림 위험 – EN 14682 불이행
슬로바키아	반사 스티커	Safety	제품의 판매 금지	강제적 리콜	– 스티커가 충분히 반사되지 않으므로 잘 보이지 않아 상해 위험 초래 – 개인보호장비지침 및 EN 13356 불이행
	플라스틱 오리	미상	제품의 판매 금지	강제적 리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되어 화학적 위험 – REACH 불이행

불가리아	어린이용 운동복	Brum Beby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후드모자 끈과 허리끈으로 목졸림 및 상해 위험 – EN 14682 불이행
	어린이용 의상	Last Star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후드모자 끈과 허리끈으로 목졸림 및 상해 위험 – EN 14682 불이행
	여아용 의상	Yesmina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후드모자 끈이 허용 길이를 초과하여 목졸림 위험 – EN 14682 불이행
	어린이용 운동복	Bibita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허용길이를 초과하는 허리끈으로 상해 위험 – EN 14682 불이행
	어린이용 드레스	Etemoglu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어깨 부분 끈으로 상해 위험 – EN 14682 불이행
	어린이용 신발	Jummy Kids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에게 위험 경고	강제적 리콜	–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서 유아의 질식 위험 초래
독일	비키니	Novum	시장 제품 회수	자발적 리콜	– 크로뮴이 함유되어 화학적 위험
	어린이용 신발	Pepperts	시장 제품 회수	강제적 리콜	– 제품의 판매 금지

▣ 호주 ACCC(경쟁소비자위원회) : 공산품 4건, 전기용품 1건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유아 침대	Incy Interiors	교체 또는 환불		– 호주 강제표준 AS/NZS 2172: 2003 '가정용 유아 침대-안전규정' 불이행 – 팔, 다리 또는 머리가 끼일 위험이 있음
조명 전선	Catchoftheday.com.au Pty Ltd, Scoopon Pty Ltd	환불		– 제조 상 결함으로 USB 연결부분 고장을 야기 – USB연결부분이 녹고 과열되며 화재 위험
유아복	Lagardere Service Asia Pacific	환불		– 저연소 경고 위험 라벨이 부재하여 소비자에게 화재 위험에 대해 알리지 않음 – 어린이 의류 강제기준인 AS/NZS 1249:2003 불이행
자전거 포크	Dirt Works Australia Pty Ltd	무상 수리		– 자전거포크가 브레이크 부품 위로 구부러져 사용자가 넘어질 수 있음
오토바이 헬멧	Monza Imports Australia P/L	환불 또는 수리		– 호주/뉴질랜드기준 AS/NZS 1698:2006 불이행 – 헬멧 착용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해 사고 시 상해 및 사망 위험

▣ 뉴질랜드 Consumer Affairs(소비자부) : 전기용품 1건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세탁기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Pty Ltd	가정 방문 무상 수리	자발적 리콜	– 수분이 전기 소켓에 침투하여 불꽃이 튀며 화재 위험 야기

Ⅱ 제품위해 News

▣ 어린이용 총으로 여동생 사살, 연이은 비극에 흔들리는 미국 사회

품목명 (구분)	어린이용 총 (공산품)	업체명	Crickett	사고유형	오발
지역	미국	출처	AFPBB News	보도날짜	2013.05.04
주 요 내 용	4월 30일, 미국 켄터키주 컴버랜드에서 5세 남아가 여동생(2세)를 22구경 라이플로 실수로 사살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라이플은 「마이 퍼스트 라이플」이라는 캐치 카피 하에 아동용으로 판매되고 있던 「Crickett」 브랜드 제품. 사고 당시 이 총은 남매의 자택 방 구석에 탄환 1발이 장전된 채 놓여 있었다. 이 총은 아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린, 블루, 여아용인 핑크색 모델 또한 판매되고 있다. (1.1kg, 총신 40cm, 전신 76cm / 단발식 / 방아쇠 잠금 가능)				

▣ 놀이시설이 무너져 2.7m 낙하, 42세 남성 꼬리뼈 골절

품목명 (구분)	놀이시설 (공산품)	업체명	미상	사고유형	낙하
지역	일본	출처	요미우리 신문	보도날짜	2013.05.04
주 요 내 용	기후현경 카카미가하라 경찰은 4일, 기후현 카카미가하라시의 야외활동시설의 체육 시설에서 목제 시설이 무너져, 남성이 약 2.7미터의 높이에서 지면으로 낙하, 꼬리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 발표에 따르면 3월 오후 4시 10분 경, 남성(42세, 회사원)이 통나무를 오르내리는 시설로 놀고 있었을 때, 밟고 있던 목제 발판 (직경 3cm, 길이 15cm)이 부러졌다. 시설은 동 시의 위탁을 받은 「카카미가하라시 시설진흥공사」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 안전 관리의 문제 여부를 경찰 조사 중.				

▣ 뉴질랜드 오클랜드서 삼성 세탁기 화재 발생

품목명 (구분)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용품)	업체명	삼성전자	사고유형	화재
지역	뉴질랜드	출처	SBS	보도날짜	2013.05.04
주 요 내 용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 가정집에서 삼성 세탁기를 사용하는 도중 불이 나 소방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구로동 다세대주택에서 전기장판 화재

품목명 (구분)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용품)	업체명		사고유형	화재
지역	서울 구로동	출처	YTN	보도날짜	2013.05.06
주 요 내 용	서울 구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80세 할머니가 숨지고, 할아버지는 크게 다쳤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작은방에 전기장판이 놓여 있던 점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면봉 내 이물질로 아동 부상

품목명 (구분)	면 봉 (공산품)	업체명	Tollyjoy	사고유형	찔림
지역	싱가포르	출처	asiaone 뉴스	보도날짜	2013.05.09
주 요 내 용	아동에게 사용하고 있던 면봉의 탈지면 부분의 안쪽에 2cm 정도 길이의 이물질이 발견됨. 남아(5개월)의 하복부에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으며, 상처는 깊지 않음. 해당 면봉은 지난 목요일에 즉시 리콜되었으며, 금속 검출 테스트 결과 이상 없음이 밝혀짐. Tollyjoy사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3달러 상당의 동등 제품으로 보상				

Ⅲ 제품안전 정책동향

유럽의 소비자제품안전 규정 변화 계획 (요약)

◇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

2013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EC)는 EU의 소비자제품 안전 및 시장 감시제도를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제품 안전 규정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법으로 통합 제안
- 기존 분산되어 있던 제품의 시장감시 규정을 통합하고 단일화하기 위한 법 마련 제안
- 시장감시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3년간(현재~2015년까지) 취할 20가지 실행계획 마련 제안

현재 EU 시장 감시 및 소비자제품 안전은 다양한 법안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와 중복이 발생한다. 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은 소비자제품 확인 및 이력추적 규정을 우수하게 결합할 것이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확실한 책임으로 소비자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의 일반 의무를 조정한다.
- 제품 안전 규정을 집행하고, 시장 감시를 위한 하나의 통일된 규정을 통해 모든 부문의 위험제품 및 규정 불이행 제품에 대한 조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
- 공급망을 통한 소비자제품의 이력추적제를 개선하여 안전 문제(예: 리콜)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의 제조국, 제품의 크기 및 특성을 어디서 허용하지 않는지, 포장 또는 제품에 동봉된 문서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유럽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의 경우, 표시는 유럽연합 또는 개별 회원국의 규정을 따른다. 제조국 표기는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관련 기본 이력추적 규정을 보충한다. 그러한 정보는 제품의 실제 제조처를 추적하는 시장감시당국의 업무를 활성화시키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소비자제품 안전 관련 양자/다자 협력으로 제조국과 연락을 가능케 한다.
- EU 시장감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위험 제품의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RAPEX(EU 위해제품 신속경보시스템) 및 시장 감시를 위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ICSMS)과 협력하여 상승작용을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EU 내부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모든 제품군에 더욱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여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은 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품 안전성 조사 협력은 불공정 경쟁도 없앨 수 있다. 이 제안은 유럽 국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동 법안은 2015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상기 요약자료 원문

< 위원회가 유럽 국회, 이사회, 유럽 경제사회위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 >

- 제품의 단일 시장에서의 제품안전 및 시장 감시 -

1. 제품 안전 및 시장감시가 단일 시장의 핵심

유럽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성장 및 고용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U 2020 전략은 지속가능한 총괄적 성장을 통해 유럽을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을 이끌어내도록 고안되었다.

제품의 자유 이동은 단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발된 자유이다. 내부 EU 무역의 75%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제품의 단일시장에서 5억명 이상이 있는 27개 회원국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한다.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또한 수천 개의 EU기업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유럽연합의 공익을 위해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이른바 조화 법안은 자유 이동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필수요건을 상술한다. 일반 제품안전법안은 유럽 시장에서 소비자제품이 안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화 법안이 부재할 경우, 특히 상호 인정 원칙 관련 조약은 유럽재판소의 법에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하지만 단일한 것은 아님) 공익은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이다. 안전한 제품은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래서 제품 안전 규정 및 시장 감시는 제품 단일 시장의 기본이 된다. 제품 단일 시장의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원할 경우, 판매 제품의 높은 안전 기준과 규정 및 그것을 지지할 효율적인 유럽 시장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규정을 이행한 안전 제품도 유럽연합의 안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에 기여하며, 국경 간 조항을 구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된 단일 시장의 성장에 기여한다.

경제 위기의 측면에서, 소비자 지출은 수입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하락했다. 이것이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적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인 이유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을 불리하게 하는 경쟁자들이 처벌받고,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업체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제품의 단일 시장은 의심할여지 없는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원한 성장과 새로운 장기 고용 생성 동인이 되기 위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제품 단일시장의 세부요소 하나하나가 적절히 작동해야 한다. 제품 단일시장에 잠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완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경제 운영자는 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 당국은 행정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으며, 부도덕한 무역업자로부터 불공정 경쟁을 없앨 수 있다. 시장 제품은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며, 판매를 활발히 해야 한다.

조화된 제품의 새로운 규정이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지만, 국가 당국과 경제 운영자들이 적용하고 따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 감시 규정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시너지 효과를 내고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 당국은 자체 내부적으로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 더욱 잘 협력해야 한다. 시장 감시조치는 유럽연합에서 더욱 집중되고 잘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자원 공유, 더 나은 IT툴, 강력한 외부 규제 및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의미한다.

일반 제품안전 디렉티브 2001/95/EC(GPSD)는 많은 소비자제품 관련 핵심 안전 조항을 담고있다. 소비자제품이 안전해야 하며, 표준 제정을 제안하고, 회원국과 국가 시장감시당국에 의무를 부여하며, 정보 교환 절차 및 위해제품 관련 신속 조정사항을 정한다. 동 디렉티브는 제품 안전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조화된 제품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 특별히 경제운영자의 의무(특히 제품 확인 및 이력추적 요건)는 시장감시 당국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툴을 제공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 유럽 집행위원회는 비식품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 및 시장감시절차를 간소화하고 더욱 통일하며 EU의 시장감시활동을 잘 조정하여 수행하고 모니터할 대책에 대한 제품 안전 및 시장 감시패키지를 채택했다.

동 패키지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소비자제품 안전에 대한 신규 규정 제안서
- 제품의 시장 감시 단일 규정에 대한 제안서
- 유럽의 안전한 제품 및 규정 이행 제품에 대한 전달, 다년간 시장 감시계획 수립
- 최종 평가 등 규정(EC) No 765/2008의 이행에 대한 보고

2. 소비자제품안전 규정

20년동안 EU 일반제품안전 법안(디렉티브 92/59/EEC, 디렉티브 2001/95/EC)은 소비자제품 안전에 상당히 기여했던 제품 안전 및 시장 감시 구조를 구축했다. 이것은 위해제품에 관한 신속 정보 교환시스템(RAPEX), 유럽연합 조화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유럽표준 제정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및 유럽 국회가 시장 감시 유럽연합 규정을 간소화하고 접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RAPEX 등 시장감시를 다루는 GPSD의 조항은 이 패키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새로운 시장감시 규정에 통합되고 제거된다.

GPSD의 기존 조항에 있는 제품안전 알림은 더욱 효율적인 최신 제품 안전 규정의 필요성을 확실히 시사했다. EU 소비자제품이 안전해야 한다는 규정은 새로운 소비자제품안전 규정의 주요 조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소비자제품에 적용가능한 부문 특정 법안과의 상호작용은 과도한 중복을 피하고 경제운영자의 법적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분명해진다.

세계화된 시장의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선된 제품 확인 및 이력추적제가 강조된다. 경제운영자(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의무는 부문 특정 규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채택된 '제품의 판매를 위한 새로운 법구조'에 따라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규정은 유럽표준의 사용 향상을 촉진한다. 기존 기준을 확인하거나 갱신하는 절차 또는 제품이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되고 최근 채택된 유럽표준화규정 1025/2012와 조정된다.

신규 소비자제품안전 규정은 21세기 EU 제품안전규정을 완성한다. 이는 제품의 단일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다.

3. 시장 감시 규정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된다. 여전히 사람들은 위해를 입고 위험제품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악덕 상인은 규정을 무시하고 확실한 공정 거래의 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내부 시장을 악화시키며, 제품의 설계 및 제조가 안전하다고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것이다. 종종 이는 규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에게 상해를 피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정직한 상인들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 감시는 우리의 주요사안이다. 유럽 전역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시장감시 노력은 시장에서 위해제품을 근절하도록 도울 것이며, 악덕 상인을 저지하고, 기업이 규정을 따르도록 독려할 것이다.

3.1 더욱 간소하게, 확실하게, 더욱 우수하게

시장 감시는 유럽 회원국이 유럽 시장과 연합 외부 국가에 도착하는 제품을 검사하고 시험함으로써 수행된다. 제품에 내부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시장감시당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 조치 및 협력 개선은 시장감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수년간 채택된 다양한 법안 결과, 시장 감시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은 분해되었고 혼란을 주며, 차이와 중복이 발생하고 경제운영자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특히, 소비자제품은 소비자법과 제품 조화법안에서 다른 시장 감시 규정의 대상이 된다. 이는 동 분야 시장감시 공무원의 노력을 방해한다.

특별히, 시장감시규정은 3개의 분리된 단계 즉, 규정 765/2008, 일반 제품안전 디렉티브, 다양한 종류의 제품 조화 법안(결의안 768/2008에 제정된 참조조항과 조화를 이룸)을 넘어 퍼져있다. 이 3가지 단계의 관계는 종종 불확실하며, 특히 많은 소비자제품들은 3가지 단계 모두에 포함된다.

유럽 국회의 일반 제품안전 디렉티브 개정 및 시장감시에 대한 Schaldemose 보고서는 이 3가지 단계적 방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며, 내부 시장에서 불확실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혼란을 준다. 동 보고서는 위원회가 내부 시장 및 EU시장의 모든 제품 관련 시장 감시의 공통 유럽구조를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가 법을 토대로 모든 제품의 단일 시장 감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시장 감시에 대한 새로운 단일 규정 제안은 이 요청에 대한 대응이며, 결함을 고쳐 협력적인 유럽연합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준비한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많은 대책을 제안한다.

- 3단계 법안을 넘어선 시장감시 규정을 함께 취합한다. 하나의 법적 수단으로 제시함으로써 유럽연합 시장감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 뿐 아니라 모순을 해결하며, 중복사항을 제거한다.

- 제안된 규정은 소비자제품과 비소비자제품, 조화된 제품과 비조화된 제품을 가능한 한 구분하지 않는다. 제품 분류의 일정 특성이 다른 방법으로 좌우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은 동일 규정 대상이다. 가끔 차이가 존재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운영자와 시장감시당국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명료해질 것이다.

- 위험제품과 시정조치를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의 통보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회원국은 종종 요구되는 정보를 통보하기 위해 어떤 법안에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통보의 동일 체계는 모든 제품에 사용될 것이다. 시장감시 절차의 최종 단계만 조화된 제품에 제한될 것이다.(회원국 중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초기 통보국이 취한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해 결정한다)

3.2 기타, 특정 개선사항

제안서는 유럽연합에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품의 자유 회람 공표가 외부 국가의 위험을 나타내도록 믿게 한다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외부 국가의 관리를 강화한다. 그 후 시장감시당국은 국가 당국이 공표를 하거나 거부하도록 지시하기 전 제품이 실제로 위험성을 나타냈는지 점검한다. 유럽연합에 들어오는 사람의 개인적 사용 용도인 제품에만 면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3국으로부터의 제품 인터넷 구매는 규제될 것이다.

동 규정은 쉽게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장 감시 활동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유지를 촉진한다. 특별히 의도된 결과는 다른 회원국이 특별 제품 관련하여 수행했던 시험 및 평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험 및 평가 기록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표준 업무가 될 것이다. 제품 시험비용이 많이 들 경우 회원국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럽연합 내 작은 시장에서의 감시가 더욱 잘 활성화될 것이다.

시장감시당국은 제품 관련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운영자에 의해 제안된 시정조치를 감시해야만 할 경우 경제운영자에게 요금을 부담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RAPEX 시스템은 위험 제품 관련하여 회원국에 통보하는데 사용되며,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통보기준은 단순화되며, 더욱 자세한 정보가 타당성과 후속조치를 위해 통보되어야 하며, 통보문을 보내는 시간 제한이 더욱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EU 제품안전 '긴급'조치 경험도 이 조치의 유효성(1년까지)이 EU 수준에서 영원한 해결책을 마련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치가 반복적으로 갱신되어야 하고, 제품을 신규 제품 안전규정에 적응시키도록 장기 투자를 할지 결정해야하는 경제운영자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줄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위험제품의 제한조치 내용 및 유형 관련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회원국에 의해 처리되거나 경제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시간에 제한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원회는 새로운 제품 안전 및 시장 감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회사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침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제안된 유럽 시장 감시 포럼은 유럽연합의 이행 조화를 위한 우수 관행을 개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 협회는 이 포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유럽 회원국의 기업 네트워크(EEN)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배포해야 하고,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와 의무에 대해 협동하고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권고해야 한다. 중소기업공사가 지지한 네트워크는 또한 중소기업의 피드백 및 새로운 규정의 이행을 위해 고려되는 이익이나 우려, 특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도 취합해야 한다.

4. 다년간 시장 감시 계획

제품은 유럽연합 내 국경 간 쉽게 이동한다. 안전성 점검은 유럽연합의 충분한 빈도와 일관성을 갖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회원국의 시장감시기관이 더욱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공동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감시의 다년간 계획 개발은 단일 시장법의 50가지 행동방침 중 하나이다. 회원국은 이미 구축된 국가 시장감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다년간 계획은 국가 단계에서 이미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활동을 중복하지 않지만 위원회 협력이 가치를 부가하고 실제 개선사항을 가져오는 분야를 확인하고 추구해야 한다. 향후 3년 동안 취해질 20가지 개별 조치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다.

(1) 동 계획에 의거하여,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은 서로 잘 의사소통하고 지지하도록 독려받을 것이다. 국가 규정 및 기업 관행 정보는 연구, 설문, 협의를 통해 취합될 것이다. 적합한 IT툴로 정보를 취합하고 저장할 것이다. 불일치, 특정 수요가 확인되고 적절한 교육, 기술적 지원 및 지침이 제공될 것이다.

(2) 시장 감시의 기본은 위험 확인 및 평가이다. 유럽에서 공통 관습이 개발되고 이행할 것이다. 위원회는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 방법을 구축하고, 지침을 마련하며 제품의 물리적 기록 및 시험소 점검을 수행할 공통 방법을 작성하는데 전념한다.

(3) 합동 프로그램 및 조치의 중앙 협력은 유용한 범위를 최대화하며, 내용의 고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4) 업무의 중복을 없애고 경험 및 정보 교환을 활성화한다. 위험 평가, 시험방법, 시정조치에 대한 대량의 정보는 유럽연합의 시장감시당국에 모이며, 위원회가 관리하는 ICSM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확인된다.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은 특별 문제가 이미 다른 경우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고 빠르게 볼 수 있다. 시험연구소 시험결과를 이용할 수 있고, 시험 반복 필요성을 없애며,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절감할 것이다. 이 툴의 유용성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입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모든 회원국 기관은 역할을 잘하도록 독려받는다. 이 성장 자원의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완전히 깨닫기 위한 필수 교육 및 지침이 있을 것이다.

(5) 위원회, 소비자, 사업 이해관계자, 국가 당국 간의 지속적 견해 교환은 유럽 협력을 보강하는데 필수적이다. 유럽연합의 시민-기업 인터베이스를 과도하게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6) 국가 안전 관리의 효율성 개선은 세관과 시장감시 당국 간의 협력 개선을 요구하며, 연합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에 수행되는 검사를 잘 대상화하는 현대툴의 사용이 필요하다.

다년간 연합 시장감시 계획은 시장감시활동의 수행에 실질적이고 실체적 이익을 줄 것이며, 현대 제품 내부 시장의 상당한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5. 규정 765/2008의 이행 보고서

위원회가 규정 765/2008의 36(2), 40조에 의거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제품 안전 및 시장 감시 패키지를 보충한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유럽 국회와 이사회에 동 규정의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연합 재정지원을 받은 적합성 평가, 인정, 시장 감시활동의 관련성에 대해 통보한다. 위원회 평가결과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안된 새로운 규정에서 반영된다.

6. 결론

제안서 패키지의 목표는 3가지이다.(소비자 안전, 기업의 부담 덜기, 당국 간 협력) 목적에 맞는 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패키지는 단일 시장에서 더욱 신뢰를 구축하며, 성장을 고무한다.

이 제안서가 채택되고 이행되면, 소비자들은 소비자제품의 안전한 시장을 믿을 수 있고, 유럽 소비자 의제에서 정한 우선사항과 연계하여 비교되고 투명한 정보 및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패키지의 이행으로 경제운영자, 특히 중소기업에게 투명한 규정을 믿고 단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등 상당한 이익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공공기관은 시장감시 구조의 합리화 및 시너지 증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지출 및 집행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공동 입법자들은 단일시장법 2의 주요 조치가 2014년 봄까지 EU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2개의 법적 제안을 채택하도록 요청받는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조치 및 비법적 조치로써, 시민 및 기업이 소비자제품의 단일시장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유럽의 성장 및 고용에 기여할 것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만든다

- 어린이안전기본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법안 발의 -

◇ 출처: 새누리당 안홍준의원 (www.cleanjun.com)

○ 최근 장난감등 제품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불량식품으로 인한 어린이 집단식중독, 어린이 교통사고, 아동성폭력 등 아동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관련 사건·사고가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5월3일)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은 3일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이하 "기본법")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기본법 주요사항 >

- "만 1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각 소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특히,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동산(動産), 시설 등의 부동산(不動産)을 포함하여 모든 물건(이하 "물품등"이라 함)에 대해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공개하고, 어린이에게 적합한 보호기준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는 "어린이안전기준"에 따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 물품 등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우려가 있으면, 국가가 사업자에 대해 수거, 제조 및 유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특별법 주요사항 >

- ▸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조립·가공 또는 수입·판매·대여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여부 등의 안전 확인을 받고,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
 - '포괄적 안전관리'가 도입되면, 사업자가 지켜야할 인증대상 범위는 확대되나, 인증체계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된다.
- ▸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도록 하여 2중, 3중으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 ▸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의사출신의 안홍준의원은

- "신체적 · 정신적으로 발달·성숙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외부의 위험요인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린이에게 적합한 별도의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여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고, "법안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부모의 알권리와 선택권까지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 덧붙여 안홍준의원은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